

노동부고시 제2006-6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의 산정기준(노동부고시 제2005-4호, 2005.1.3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6년 2월 28일

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산업재해환자(이하 “산재환자”라 한다)를 요양함에 있어”를 “산업재해환자(이하 “산재환자”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요양에”로 한다.

제2조제1항중 “국민건강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하며,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중 “요양급여의 범위”를 “요양급여의 범위·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내역 및 기준에 의한다.

②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별표 6에 의한다.

제3조 본문중 “각호의 1과”를 “각호의 어느 하나와”로 하고, 동조 제4호중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을 각각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으로 하며, “지정진료”를 “선택진료”로 한다.

제8조의2 본문중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고시 제2001-62호)”를 “행위및상대가치점수”로 한다.

제9조제1항중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 I. 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를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 I. 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이하 “자기공명영상진단 세부 산정기준”이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를 “행위및상대가치점수”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두경부, 척추, 견관절, 고관절 또는 슬관절의 손상 및 질환에 대해서는 자기공명영상진단 세부 산정기준중 일반원칙에 의하여 진단시 1회 인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 인정할 수 있다.

1. 장해상태의 확인을 위한 경우

2. 상병상태의 호전이 없거나 악화로 인하여 진료방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의학적으로 촬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수술 후 상병상태 확인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산업재해보상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등) ①국민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이 경우 요양급여의 비용은 별표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산재요양담당의료기관이나 산재환자가 구입한 가격 또는 실제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②별표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이 국민건강보험관련규정의 개정으로 새로이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날부터 국민건강보험관련규정에 의한다.

③산재환자의 진료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 및 별표에서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과 비용중 산재환자의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 노동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 인정할 수 있다.

별표의 제목 “행위및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하지 아니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을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으로 한다.

별표 제1절 치과보철 [보철원칙] 제1호 및 제2호중 “19K-20K로”를 “75wt.% 이상의 금과 백금족 원소를 함유한 치과주조용 금합금으로”로 하고, 제3호중 “카-3”을 “카-3 : 카-4”로, “적용할 수 있다”를 “적용하되, [진료원칙]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하며, 제8호중 “구개보철 및 악골보철”을 “안악면보철”로 한다.

별표 제1절 치과보철중 [치과보철료]·별표 제2절 및 별표 제6절 초음파중 [초음파 검사료]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제7절 [원칙]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복합상병에 대해 전문과목별로 장해보상청구용 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각각 산정할 수 있다.

별표 제7절 [수수료]중 너-3란을 삭제하고, 너-4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너-9란 다음에 너-9-1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너-10란을 삭제한다.

너-4	폐질상태 신고용 진단서 확인	30,000	20,000	15,000	10,000
-----	-----------------	--------	--------	--------	--------

너-9-1	X-ray CD 복사 수수료(개당)	10,000	10,000	10,000	10,000
-------	---------------------	--------	--------	--------	--------

별표중 제8절을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8절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중전의 요양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행한 요양의 요양급여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에 대하여는 중전의 고시에 의한다.

③(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적용례) 별표 제2절 재활보조기구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이후 최초로 지급 또는 구입한 재활보조기구부터 적용한다.

④(보험급여 청구서 확인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에 대한 적용례) 별표 제7절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이후 최초로 의료기관에서 확인한 보험급여청구서 또는 발급한 진단서부터 적용한다.

[치과보철료]

분류번호	분류	금액(원)
카-1	주조금관	218,000
카-2	3/4금관	218,000
카-3	도재전장주조관(귀금속)	327,000
카-4	도재전장주조관(비귀금속)	217,000
카-5	국소의치(백금가금주조)(1악)	1,515,000
카-6	국소의치(코발트크롬)(1악)	650,000
카-7	총의치(코발트크롬상)(1악)	788,000
카-8	총의치(레진상)(1악)	679,000
카-9	캐스트코아	131,000
카-10	포스트(기성품)	82,000
카-11	악안면보철(귀금속 : 유치악)	1,706,000
카-12	악안면보철(코발트크롬 : 유치악)	1,051,000
카-13	악안면보철(코발트크롬 : 무치악)	1,051,000
카-14	임시레진관	21,000
카-15	임시국소의치(추가 1치당)	35,000(5,000)

※ 재료대와 기술료를 합한 금액임

제2절 재활보조기구

[지급원칙]

1. 의지 · 보조기 · 구두 · 의자차 · 목발 · 보청기 · 안경 · 콘택트렌즈 · 의안 · 가발 · 흰지팡이 · 인공후두(이하 “재활보조기구”라 한다)의 재료는 나무, 가죽, 금속(강철, 알루미늄, 티타늄 등), 실리콘, 레진 및 프라스틱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재활보조기구의 수가는 지정의료기관 등급과 관계없이 동일하다.
3. 재활보조기구의 장착수수료 및 기타 비용중 요양급여산정기준에 따로 정하지 아니한 비용은 수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4. 상지의지는 반자동형(기능형)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재환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미관형을 지급한다.
5. 하지의지는 일반형소켓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Stump가 불량하여 실리콘형 소켓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실리콘형(일반형 소켓 내부에 실리콘내피를 사용하여 피부보호, 충격흡수 및 부착기능을 겸한 형태)소켓을 지급할 수 있다.
6. 대퇴절단의지는 타-14-1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재환자가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규칙」 별표 6의 넓적다리 의지를 지급하며,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타-15를 인정하되, 타-15는 산재의료관리원 재활공학연구센터에서 지급하도록 한다.

7. 재활보조기구는 요양종결시 지급하되, 내구연한을 초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경과시마다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재요양기간중 재활보조기구의 내구연한이 도래할 경우에는 재요양 종결시에 지급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활보조기구를 치료중에도 지급할 수 있다.

가. 사지절단환자 또는 신경마비로 인하여 관절운동이 불가능한 환자로서 치료종결 후에도 계속적인 의지나 보조기 장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나. 경추, 흉추, 요추 등 척추손상 또는 척추질환의 치료를 위해 보조기 착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다. 관절손상 등으로 인한 관절운동의 제한 또는 관절의 고정을 위하여 보조기 착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라. 하지골절로 인하여 통원치료시 목발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8. 무지 및 기타수지 의수의 지급에 있어서는 무지는 지관절, 기타수지는 원위지관절이하에서 절단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9. 이미 장착하고 있던 재활보조기구가 일부 훼손되어 본래의 기

능회복을 위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수할 수 있다.

10. 재활보조기구의 추가지급, 장착에 따른 단순외과적 처치 및 수리는 산재의료관리원에서 담당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근로자가 재활보조기구를 거주지 관내 의료기관에서 구입, 처치 또는 수리한 후 그 비용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가. 의지 및 보조기를 제외한 재활보조기구의 추가지급, 장착에 따른 단순 외과적 처치 및 수리

나. 거리·교통편의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의지 및 보조기를 산재의료관리원에서 처치 또는 수리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급대상]

1. 분류번호 타-7-1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짧은 아래팔 의지(short below-elbow amputation prosthesis) 지급대상자로서 단단부의 잔존근육에 의한 근전도 제어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반자동형(기능형)을 사용하기가 곤란한 경우
2. 분류번호 타-14-1 : 타-15 : 고관절로부터 대퇴골 길이의 25% 이상 남기고 하지가 상실된 경우
3. 분류번호 타-23-다 : 완관절 관절운동 제한 또는 기능발휘를 위한 경우

4. 분류번호 타-24-라 : 두부와 경추부의 회선, 굴곡을 제한해야 할 정도의 중증인 경우
5. 분류번호 타-25-마 : 흉·요추부의 관절운동을 제한 또는 관절을 고정할 경우
6. 분류번호 타-29-라 : 슬관절 또는 대퇴슬개골관절의 관절운동을 견고하게 제한 또는 고정할 경우
7. 분류번호 타-31-나 : 족관절의 관절 불안정성에 따른 관절운동을 제한으로 평상화로 정상보행이 불가능한 경우(평상구두를 보조기에 부착하지 않고 단독으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
8. 분류번호 타-31-다 : 족장지관절의 변형으로 평상화로 정상보행이 불가능한 경우
9. 분류번호 타-37-1 : 환자 상병정도 및 체형등에 따라 주치의 소견에 의하여 착용이 필요한 경우
10. 분류번호 타-37-4 : 뇌손상, 척수손상과 그에 준하는 상병으로 인하여 의자차(전동의자차 포함)를 사용하는 자중 욕창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11. 분류번호 타-37-5 : 뇌손상,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로 스스로 체위변경이 어려워 욕창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12. 분류번호 타-37-6 : 뇌손상, 척수손상, 말초신경손상, 비뇨기계손상 등으로 인하여 배뇨제어가 어려운 경우

[재활보조기구의 금액 및 내구연한]

1. 상지의지(Prosthesis of the upper extremities)

구분	분류 번호	분 류	금액(원)	내구 연한
전박절단	타-7-1	근전전동의수 (myoelectrically controlled, motor driven below-elbow prosthesis)	5,500,000	5년

2. 하지의지(Prosthesis of the lower extremities)

구 분	분 류 번 호	분 류	금액(원)	내구 연한
대퇴절단	타-14-1	대퇴절단의지(A-K prosthesis) (공압식 또는 유압식 : Pneumatic or Hydraulic Control Type)		
		가. 일반형 소켓	1,479,000	3년
		나. 실리콘형 소켓	2,041,000	5년
	타-15	대퇴절단의지(A-K prosthesis) (인공지능식 : Intelligent Control Type)		
		가. 일반형 소켓	2,803,000	3년
		나. 실리콘형 소켓	3,365,000	5년

3. 보조기(Brace of the extremities and back)

구 분	분 류 번 호	분 류	금 액(원)	내 구 연 한
상 지 보조기	타-23	단상지 보조기 다. 운동형 단상지 보조기	142,000	3년
척 추 보조기	타-24	경추 보조기 또는 경추칼라 (cervical spine brace or Thomas soft collar)		
		라. 4지주 경추보조기	203,000	3년
	타-25	흉·요추보조기 (dorsal, lumbar spinal brace) 마. 나이트식허리 보조기	136,000	3년
하 지 보조기	타-29	무릎 보조기(knee cage) 라. 플라스틱슬관절보조기(수가공품)	282,000	3년

4. 구 두

구 분	분 류 번 호	분 류	금 액(원)	내 구 연 한
구 두	타-31	평상구두(conventional shoe) 나. 목이 긴 구두(high top shoe) 다. 안장구두(rocker bottom shoe)	139,000 131,000	2년

5. 기 타

구 분	분 류 번 호	분 류	금 액(원)	내 구 연 한
기 타	타-37-1	가발(wig)	식 가	5년
	타-37-4	욕창예방방석(고무제-공기유동형) (wheelchair seat cushion for pressure ulcer prevention)	250,000	3년
	타-37-5	욕창예방매트리스(고무제-공기유동형) (pressure relieving mattress or overlay for pressure ulcer prevention)	1,850,000	3년
	타-37-6	집뇨기(고무제-역류방지형) (urine bag)	57,000	1년

6. 재활보조기구 수리료

구 분	분 류 번 호	분 류	금 액(원)
상지의지	타-38	상박통 교환	201,000
	타-39	상박관절 장식 교환	538,000
	타-39-1	상박관절 장식교환(반자동형)	930,000
	타-41	전박통 교환(작업용)	148,000
	타-42	훅크 교환	351,000
	타-43	반자동 의수 교환	532,000
	타-44	케이블 교환	119,000
	타-45	어깨밴드 교환	24,000
	타-45-1	미관용의수교환(실리콘)	255,000
	타-45-2	주관절 장식 교환(반자동형)	964,000
	타-45-3	단소전박 장식 교환	454,000

구 분	분류 번호	분 류	금액(원)
하지의지	타-46	대퇴통 교환	444,000
	타-47	무릎 관절장식	707,000
	타-47-1	대퇴용 무릎관절 장식교환(인공지능식)	2,181,000
	타-47-2	슬관절 이단의지용 무릎관절 장식교환	1,060,000
	타-48	발목장식 교환(의족용)	158,000
	타-49	족부 교환	32,000
	타-50	(대퇴용)품카바 교환	137,000
	타-51	흡인 밸브 교환	14,000
	타-52	(대퇴용)스타키넷트교환	24,000
	타-53	(하퇴용)품카바 교환	104,000
	타-54	하퇴통 교환	416,000
	타-55	(하퇴용)스타키넷트카바교환	21,000
	타-56	(단소하퇴용)장식교환	119,000
	타-57	(단소하퇴용)콜셋밴드교환	83,000
	타-58	(하퇴용)콜셋밴드 교환	41,000
	타-59	실리콘내피교환	435,000
	타-59-1	하지의지파이프어답터교환	75,000
	타-59-2	회전테이블 교환	302,000
	타-59-3	대퇴의지소켓 교환(실리콘형)	664,000
	타-59-4	하퇴의지소켓 교환(실리콘형)	527,000
	타-59-5	고관절장식 교환	541,000
	타-59-6	고관절의지소켓 교환	546,000
	타-59-7	(대퇴용)실리콘 내피교환	646,000
	타-59-8	(싸임식용)실리콘 내피교환	517,000
	타-59-9	(슬관절용)소켓연결 어답터 교환	197,000
	타-59-10	더마실 교환	108,000
	타-59-11	디지털 컵 교환	113,000

구 분	분류 번호	분 류	금액(원)
보조기	타-60	장보조기 장식 교환	91,000
	타-61	쥬라늄커브 교환	25,000
	타-62	발목장식 교환(보조기용)	33,000
	타-63	가죽밴드 교환	21,000
	타-64	무릎띠 교환	19,000
	타-65	크렌자크식 교환	68,000
	타-66	속신	162,000
	타-66-1	정형화교환	100,000
의자차	타-68	시트교환	27,000
	타-69	등받이교환	27,000
	타-70	뒷바퀴교환	49,000
	타-71	앞바퀴교환	25,000
	타-72	팔받이교환	12,000
	타-73	발판교환	14,000
	타-74	핸드링교환	25,000
	타-75	(일반형)브레이크 교체	14,000
	타-76	(경량형)브레이크 교체	29,000
	타-77	12 " 뒷바퀴 전체조립(자동)	58,000
	타-78	16 " 뒷바퀴 전체조립(자동)	85,000
	타-79	시트 교환(전동)	29,000
	타-80	등받이 교환(전동)	35,000
	타-81	팔받이 교환(전동)	14,000
	타-82	발판조립(전동)	16,000
	타-83	측받이 교환(일반형)	16,000
	타-84	측받이 교환(경량형)	26,000
	타-85	요크조립(일반형)	30,000
	타-86	요크조립(경량형)	43,000
	타-87	배터리 교환(전동)	162,000

[초음파 검사료]

분류 번호	분류	부위	금액(원)			
			종합전문 요양기관	종합병원	병원	의원
거-4	초음파 검 사	흉·복부	54,000	51,000	47,000	44,000
거-5	초음파 검 사	신장· 기타부위	43,000	40,000	37,000	35,000
거-6	초음파 검 사	심장 (도플러)	109,000	102,000	94,000	89,000
거-7	초음파 검 사	기타 (도플러)	54,000	51,000	47,000	44,000